

글로벌현장학습학점인정규정

5-1-44

규정번호	5-1-44
제정일자	2019.3.11
최근개정	2026.7.20
개정차수	6차 개정
관리부서	글로벌교육 팀

[전면개정 2021.9.13.]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전공과 연계한 글로벌 현장학습을 통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언어능력과 전공실무능력을 배양하고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및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구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과 학칙 제24조 제11항의 의한 ‘해외현장실습’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이하 “글로벌 현장학습”이라 한다)

제 3 조(실습기관) ① 글로벌 현장학습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지정공모로 선정된 해외교육기관 및 산업체
2. 대학이 자체적으로 발굴한 해외교육기관 및 산업체
- ② 대학이 자체적으로 발굴한 실습기관과의 협약은 총장과 실습기관장의 명의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황에 따라 글로벌교육센터장과 실습기관의 부서장 명의로 체결할 수 있다.
- ③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
2. 학생의 보건, 위생 및 안전 보장
3. 실습 시설, 설비 및 물품 제공
4. 언어,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수행능력 강화 교육 및 지도
5. 운영 및 학생 지도를 위한 현장교육 담당자 확보
6. 그 밖에 대학에서 정한 기준

제 4 조(신청자격) 글로벌 현장학습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일 기준 2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파견예정 시기 재학생 신분 유지)(개정 2024.7.24.)
2. 누계 평점 3.0/4.5(B0) 이상인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개정 2024.7.24.)
3. 해당국가의 언어별 어학 자격소지자
4. 기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 글로벌현장학습 사업 선발기준을 준수하는 자(신설 2024.7.24.)

명지전문대학 규정 / 5-1-44 글로벌현장학습학점인정규정

언 어	어학시험성적 종류 및 기준점수	비 고
영 어	TOEIC 550점, G-TELP 2등급 42점, OPIc NH 등급, 토익 Speaking 레벨5(110점), TEPS 450점, ESPT 3급, TOEFL(PBT 450점, CBT 137점, IBT 55점), TOSEL(A)397점, TESL 104점, IELT 4.5, ITT BUSINESS 3급 이상	접수마감일기준 2년 이내에 발급된 성적만 인정
중국어	新HSK3급, TSC 레벨3, CPT 300점, BCT 2급 이상, TOCFL(화어문능력시험) A1(Level 1) 이상	
일본어	JPT 415, JLPT 신N4, SJPT 레벨3, 니켄 450점 이상	

제5조(제출서류) ① 글로벌 현장학습 신청자의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가신청서
 2. 현장학습계획서(한국어 및 지원외국어)
 3. 성적증명서
 4. 공인어학성적증명서
 5.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자)
 6. 보호자 동의서 및 학생서약서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8. 기타 관련사업에서 요구되는 제출서식(신설 2024.7.24., 개정 2026.7.20.)
- ② 접수마감일 기준 공인어학성적 미제출자는 파견 확정시기까지 공인어학성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선정을 취소한다.

제 6 조(학생선발) ① 글로벌 현장학습 학생선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 해외현장실습 :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위원회
- ② 취업취약계층(다문화가정 자녀 포함) 30% 내에서 우선 선발한다.
- ③ 동일인이 반복참여는 할 수 없다.
- ④ 최종 선발된 자는 해당 학기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7 조(글로벌 현장학습 운영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글로벌교육센터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현장실습지원센터장 및 학부장으로 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글로벌 현장학습 실습기관에 대한 자격 심사
 2. 글로벌 현장학습 참여 학생 심사 및 선발
 3. 글로벌 현장학습 학생성적평가에 대한 심의
 4.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 결과 평가 및 차년도 운영 계획 수립
 5. 글로벌 현장학습 학생 의무 위반자 조치

6. 기타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개최는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글로벌교육센터 팀장으로 한다.

제 8 조(프로그램 구성) ① 글로벌 현장학습은 사전교육과 현지적응교육 및 산업체실습을 포함하여 전체 16주 이상 구성한다.

1. 사전교육 : 50시간 이상(멘토링, 오리엔테이션, 어학교육, 안전교육, 성희롱 방지 교육 등)

2. 현지적응교육: 4~8주(현지 적응에 필요한 문화, 어학교육 및 전공연계 직무교육)

3. 산업체실습 : 8~12주(현지 교육기관 내 실습처 또는 산업체 전공관련 현장실습)

② 프로그램 종료 후 멘토링제, 성과관리 및 만족도 조사 등 사후관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 9 조(평가) ① 글로벌 현장학습 평가는 절대평가로 한다.

② 글로벌 현장학습을 완료한 학생은 종료 후 출근부, 주간실습보고서, 성과 및 성취도 평가표 등을 글로벌교육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09.26.)

③ 글로벌교육센터는 학생들이 제출한 평가서류를 해당 학과장에게 평가를 요청하고, 학과장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한다.

④ 성적은 인정자에 한하여 통합전공 18학점을 P(Pass)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글로벌 현장학습을 중도 포기한 경우

2. 글로벌 현장학습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3.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 10 조(보험가입) 글로벌 현장학습에 참가하는 학생을 각종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는 재해보험 및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순회지도) ① 글로벌 현장학습 실태 파악과 학생지도를 위하여 글로벌 현장학습기간 중 글로벌교육센터장 또는 해당 학과장은 순회지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7.20.)

② 순회지도 중 실습생의 작업환경, 근무상태 등을 점검하고 실습생과 실습기관의 애로점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2 조(학생 안전 및 보호조치)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 중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국가재난 발생 시 재난 상황에 따라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일시 중단 또는 복교 등 학생 안전 및 보호에 우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일시 중단의 경우 글로벌 현장학습의 지속 운영 및 학점 취득 요건을 갖추는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2. 복교에 따른 중단 시 대학 규정에 따른 학점 취득 요건을 갖추어 경우 통합전공 학점으로 인정

명지전문대학 규정 / 5-1-44 글로벌현장학습학점인정규정

할 수 있으나 학점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체교과 등의 수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3 조(학생의 의무) 글로벌 현장학습의 참여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체류국가의 법규, 문화를 준수하며,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글로벌 현장학습에 관련된 서류는 교육 종료 후 2주 이내에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실습 기관의 내규 및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 글로벌 현장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산업체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5. 글로벌 현장실습과정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학부(과)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제 14 조(학생의무 위반자 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수생에 대해서는 학점인정을 불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글로벌 현장실습 중 기관 내규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
2. 고의적으로 교육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3. 고의적으로 업체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4. 기타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제15조(기타사항) 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현장실습지원센터 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을 준용한다.

② 글로벌 현장학습 참가자는 이수 후 3년간 개인정보 제공(취·창업팀, 취업정보 현황)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개정 2022.06.08.,2024.7.24.,2026.2.6.)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부개정)

이 규정은 2021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하되,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 <1> - <15> (생략)

<16> 글로벌현장학습학점인정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의 "진로취업지원센터"를 "진로취 · 창업센터"로 변경한다.

<17> - <25>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9조제2항)

명지전문대학 규정 / 5-1-44 글로벌현장학습학점인정규정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4조제1호·제2호·제4호, 제5조제1항제8호, 제15조제2항)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5조제2항)

부 칙[별지삭제]

이 규정은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5조제8호, 제11조제1항, [별지제1호], [별지제2호], [별지제3호], [별지제4호], [별지제5호], [별지제6호], [별지제7호], [별지제8호], [별지제9호], [별지제10호], [별지제11호])

명지전문대학 규정 / 5-1-44 글로벌현장학습학점인정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삭제(2026.7.20.)>

[별지 제2호 서식] <삭제(2026.7.20.)>

[별지 제3호 서식] <삭제(2026.7.20.)>

[별지 제4호 서식] <삭제(2026.7.20.)>

[별지 제5호 서식] <삭제(2026.7.20.)>

[별지 제6호 서식] <삭제(2026.7.20.)>

[별지 제7호 서식] <삭제(2026.7.20.)>

[별지 제8호 서식] <삭제(2026.7.20.)>

[별지 제9호 서식] <삭제(2026.7.20.)>

[별지 제10호 서식] <삭제(2026.7.20.)>

[별지 제11호 서식] <삭제(2026.7.20.)>